

영주시 공고 제 2023 - 166호

2023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를) 근로자 모집 재공고

2023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를) 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영 주



1. 모집분야 및 인원 : 숲가꾸기패트를 : 2명

2.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자체배점 기준표에 의함)

나. 면접 및 실기시험 (엔진톱 활용 여부)

※ 엔진톱 : 허스크바나346XP, 허스크바나550XP, 허스크바나560XP 中 1개 기종

3. 모집일정

가. 접수기간 : 2023. 2. 3.(금) 9:00 ~ 2. 9.(목)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영주시청 산림과 산림방재팀 ☎(054)639-6812

- 우편접수 : 영주시 시청로 1 산림과

다. 면접 및 실기일자 : 2023. 2. 10.(금)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합격발표 : 2023. 2월 중(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마. 유의사항 : 동종분야(산림·조경·공원·녹지) 중복 지원 불가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참여 신청서 1부

- 동의서 3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본인 및 가구원을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 미제출 시는 해당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술교육 이수증 및 자격증(사본), 해당분야 근무 경력 증명서
 - 교육 인정 기간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18. 2. 1. ~ 23. 1. 31.)
 - 경력 인정 기간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20. 2. 1. ~ 23. 1. 31.)
- 운전면허증, 구직등록증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한 자료 등
- ※ 증명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음

다. 기타서류(합격자에 한함)

- 보건소 및 병원에서 발급한 취업용 건강진단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한 진단서)
- 제출기한 :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 미제출 혹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
술자 기능 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나.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다.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주시로 되어있는 자

- 선발 우선순위
 - 위험목 제거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
 - ※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기타 영주시에서 정한 우선순위

6. 신청자격의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다만 2023년 2월 고교, 대학졸업 예정자(2023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라. 1세대 2인

7. 우선선발

- 가. 취업취약계층(취약계층 범주 : 붙임2 참고)

8. 사업참여 제한 및 감점 요인

- 가. 중복참여의 제한(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 나. 반복참여자 : 20점 감점
 - 반복참여 : 최근 3년중 2년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가자로 간주(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모두 포함)
 - 만 65세 미만의 참여자의 경우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시 1년간 후순위 선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참여자 선발 이후(또는 사업운영 중)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 반복참여 제한 예외

- 만 65세 이상 고령자(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점 감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자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공공산림가꾸기)이 아닌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다.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20점 감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중위소득(70%)	5,059,587	5,675,261	6,290,934	6,906,608	7,522,282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 ▲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도의 “군” 지역

9.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기간 : 약 10개월 정도(예산소진시까지)

※ 예산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관내

다. 작업내용

-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등목사다리를 활용하여 주택지 등 건축물 주변 위험목 제거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산림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림관련 제반업무, 근무일지 작성,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등 현장 활동 기록 등

10. 근로조건

가. 인부임

- 84,960원/1일(수당포함)

※ 조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00원/월 추가 지급

- 주 5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주차) 부여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연차) 부여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임업훈련기관에서 교육기간 중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근무

※ 동절기(11월~익년 2월말)는 17:00까지 단축운영 가능

11.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상기 채용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자는 면접실기시험 당일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장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신청자에 대하여는 영주시에서 따로 정한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위에 의해 사업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마. 사업 참여자가 전년도 사업에 경고장 발부 받은 경우 및 무단사퇴를 한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건강 이상 및 허위서류 제출 등에 문제가 발생한 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사.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아. 참여자는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외의 사항은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카. 본 모집공고 계획은 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일모아 시스템상 사업참여자 이력조회가 면접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파. 참여 근로자 전원 기술교육(1~2주/합숙)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산림과 산림방재팀(☎689-6812)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롤)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3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장 <input type="checkbox"/> 위기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갱생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성매매피해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취업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 . ~ 20 .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 경력 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2019. 01. 01 이후 경력만 인정)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① 본 신청서는 산사태현장에방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인 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참여구분	국세청	소금액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기간년월, 기간종년월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묵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② “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 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073,693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336,789	4,864,509	5,392,229	5,919,950	6,447,670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를)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가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성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